

제 617 호

법인설립허가증

1. 법인명칭 :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
2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, 백상빌딩 10층
3. 대표자
 - 성 명 : 이 재 형
 - 생년월일 :
 - 주 소 :
4. 사업내용
 -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,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, 미반환보증금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
 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제5항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의 업무
 -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
 -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,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5. 허가조건 : 뒷면에 기재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6, 「민법」 제32조와 「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.

2021년 6월 10일

환경부장관



5. 허가조건

-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
-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
- 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아야 함
-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(수익사업)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거나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
-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7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계획, 수입·지출 예산·결산서, 재산목록 등을 기간 내에 제출할 것
-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-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실적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없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
-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모집등록을 하는 등 기부금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-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

<변경사항>

일 자	내 용	확인